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2-5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엔에이치엔페이코(주)(대표이사 정연훈)

2. 조치내용
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제24조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으로 확인된 엔에이치엔페이코(주) 대하여 과태료 27.2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-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하여야 하고,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
 - 엔에이치엔페이코(주)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단말기를 일부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,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를 외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았고, 결제웹서버에 대하여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함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
 - 엔에이치엔페이코(주)는 약관을 ①2021.2.5., ②2021.5.1. 2회 변경·시행하면서, 시행일 1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제2항 및 제3항,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7조, 제15조 제1항 제3호·제5호